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28

발의연월일: 2020. 6. 24.

발 의 자: 한병도·김성주·이원택

박재호ㆍ허 영ㆍ이상직

김승원 · 박상혁 · 김수흥

김철민 · 전용기 · 이병훈

이철규 · 윤영찬 · 김영배

송기헌 • 윤준병 • 민병덕

신영대 · 이용호 · 김민석

김윤덕 · 홍익표 의원

(239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도시의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인구감소 위기를 넘어 지방소멸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임.

2019년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방소멸위험지수 2019'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97곳(42.5%)이며, 지역을 세 분화해 읍·면·동으로 보면 1,503개가 30년 이내에 소멸될 지역으로 분 류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정부 여러 부처에서 정책을 수립해 시행했지만,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으로만 한정되고 있어

서 청·장년층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감소를 막지 못하여 도시 내일자리 창출에 기반한 도시 활력 증가, 인구감소 지역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었음.

더욱이 지방도시의 인구감소 현상은 생활기반 및 지역경제의 악화뿐 아니라 삶의 질 수준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대책 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바임.

이에 인구감소위기지역을 지정토록 해 인구감소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의 정주여건 조성뿐만 아니라 생활기반을 확충하여 인구 및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 제16조의5 및 제16조의6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병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 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 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인구감소위기지역"이란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여 지역이 소멸되거나 소멸될 우려가 있어 정부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외의 지역 중 제16조의2에 따라 지정되는 시·군(이하 "시·군"이라 한다)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중 "발전을"을 "발전,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위기 극복 등을"로 한다.

제4조제2항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계획"을 "국토계획 및 「저출산·고 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으로 한다.

- 16. 인구감소위기지역의 지정·시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제2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0. 인구감소위기지역의 지정·시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제1항 중 "시·도 시행계획 및 제18조의3에 따른 국가혁신융복합

단지의"를 "시·도 시행계획, 제18조의3에 따른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추진 실적 및 제16조의2에 따른 인구감소위기지역의"로 한다.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6조의2(인구감소위기지역의 지정) ① 인구감소위기지역은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외의 지역 중 시·군별로 지정한다.
 - ② 인구감소위기지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시장·군수는 행정안전부장 관에게 인구감소위기지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구감소위기지역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연평균 인구감소율, 출산율, 생산가능인구수, 재정여건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구감소위기지역을 지정하여야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군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인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지정 여부, 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시장·군수 및 도지사에게 통보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구감소위기지역에 대한 지정 신청,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제16조의3(인구감소위기지역에 대한 시책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는 인구감소위기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1. 국내외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 2. 대학·연구소·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사

항

- 3.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 개선 및 제도적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 4. 공공기관을 활용한 지역의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 5. 사회간접자본의 지원, 교육·문화·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농림·해양·수산업 지원, 주택건설 및 개량에 관한 지원 및 산업단지 지정특례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시책 중 인구감소위 기지역의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소관으로 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시책에 대한 추진계획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
- 제16조의4(인구감소위기지역의 지정 해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구 감소위기지역의 인구가 증가하여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국 가균형발전위원회 및 해당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경우 지정 해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시장·군수 및 도지사에게 통보한다.

- 제16조의5(인구감소위기지역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위기지역에 사회간접자본, 교육·문화·관광시설, 농림·해양·수산업 지원, 주택건설 및 개량, 산업단지 지정특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수 있다.
 - ② 인구감소위기지역에 입주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 신청 사무에 대한 지원을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도 지역혁신지원단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지역혁신지원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방식에 따라 해당 사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③ 인구감소위기지역에 입주한 사업자로부터 제2항 각 호의 승인·허가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 제16조의6(인구감소위기지역에 대한 조세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는 인구감소위기지역에 입주한 사업자에게 「조세특례제한 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인구감소위기지역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중 대통령 링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의 보조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 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인상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22조제2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인구감소위기지역의 시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u><신 설></u>	12. "인구감소위기지역"이란 인
	구가 현저히 감소하여 지역이
	소멸되거나 소멸될 우려가 있
	어 정부의 특별한 지원이 필
	요한 지역으로서 수도권, 광
	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외의 지역 중 제16조의2에 따
	라 지정되는 시·군(이하 "시·
	군"이라 한다) 지역을 말한
	<u>다.</u>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책무)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u>발</u>	<u>발</u>
<u>전을</u>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	전,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보하고 지역주도의 관련 시책	위기 극복 등을
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제4조(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수립) ① (생략)

- ② 국가균형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다.
- 1. ~ 15. (생 략) <신 설>

16. (생략)

③ 국가균형발전계획은 「국가 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 정운용계획, 「국토기본법」 제 6조에 따른 <u>국토계획</u>과 연계되 어야 한다.

④·⑤ (생 략)

제7조(시·도 발전계획의 수립) ① 조 (생 략)

- ② 시·도 계획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 9. (생 략)

<신 설>

10. (생략)

③ ~ ⑤ (생 략)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1. ~ 15. (현행과 같음)
16. 인구감소위기지역의 지정·
시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
히-
3
국토계획 및 「저
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
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
획
<u>-</u> ④·⑤ (현행과 같음)
제7조(시·도 발전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1. ~ 9. (현행과 같음)
10. 인구감소위기지역의 지정·
시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
항
으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가균형발전위원회는 매년 부문 별 시행계획, 시·도 시행계획 융복합단지의 추진 실적을 평 가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신 설>

제9조(시행계획의 평가 등) ① 국 제9조(시행계획의 평가 등) ① --

-----시·도 시행계획, 및 제18조의3에 따른 국가혁신 제18조의3에 따른 국가혁신융복 합단지의 추진 실적 및 제16조 의2에 따른 인구감소위기지역의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인구감소위기지역의 지정) ① 인구감소위기지역은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 별자치도 외의 지역 중 시·군 별로 지정한다.

- ② 인구감소위기지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시장·군수는 행정안 전부장관에게 인구감소위기지 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구감소위기지역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연평균 인구 감소율, 출산율, 생산가능인구 수, 재정여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구감소 위기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국 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듣

<신 설>

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군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 체의 장인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지정 여부, 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시장·군수 및 도지사에게 통보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구감소위 기지역에 대한 지정 신청,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링크로 정한다.
- 제16조의3(인구감소위기지역에 대한 시책추진) ①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위기지 역에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1. 국내외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 2. 대학·연구소·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 3.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 개선 및 제도적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 4. 공공기관을 활용한 지역의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연구개

 발 지원에 관한 사항
- 5. 사회간접자본의 지원, 교육· 문화·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농림·해양·수산업 지원, 주택 건설 및 개량에 관한 지원 및 산업단지 지정특례에 관한 사 항
- 6.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시책 중 인구 감소위기지역의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제1 항 각 호의 시책을 소관으로 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에게 해당 시책에 대한 추진계 획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를 따라야 한다.
- 제16조의4(인구감소위기지역의 지정 해제) ① 행정안전부장관 은 인구감소위기지역의 인구가

<신 설>

<신 설>

증가하여 지원의 필요성이 없 어진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해당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도 지사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경우 지정 해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시장·군수 및 도지사에게 통보 한다.

제16조의5(인구감소위기지역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는 인구감소위기지역에 사회간접자본, 교육·문화·관광 시설, 농림·해양·수산업 지원, 주택건설 및 개량, 산업단지 지정특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수 있다.

② 인구감소위기지역에 입주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승인· 허가 신청 사무에 대한 지원을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도 지

역혁신지원단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지역혁신지원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방식에 따라 해당 사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2조

 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제16조의6(인구감소위기지역에

<신 설>

제22조(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설 제22조(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설 치) ① (생략)

②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 11. (생 략) <신 설>

12. (생략)

③ (생략)

대한 조세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위기 지역에 입주한 사업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인구감소위기지역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중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 해서는 국가의 보조금을 「보 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 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 조율에 따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치) ① (현행과 같음)

1. ~ 11. (현행과 같음)

12. 인구감소위기지역의 시책추 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현행 제12호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